

-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8. 9. 17 ————— 장용희의원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1998. 9. 17

다. 상 정 일 자 : 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98. 9.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장용희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행정조직 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정원과 직제내용에 맞게 사하구의회사무국의 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제제」 폐지에 따른 조직·분장업무 조정

○ 의정제(장), 의사제(장) 관련규정 삭제

○ 의정제, 의사제로 구분하여 분장된 사무를 사무국의 분장사무로 하고 대외 교류협력, 회의내용 속기·녹음에 관한사항 및 각종자료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추가

2). 전문위원 임용직렬 및 분장사무 조정

○ 전문위원 임용직렬 조정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또는 5급·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로 단수직렬 조정

○ 사하구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임용 규정 및 전문위원 수행사무 세분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방행정조직 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사하구의회사무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줌이 가하다고 사료 됨

4. 질의답변 요지

- 상임위원회별 안전심사 과정에서 검토되지 못하고 직접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발의되는 서면동의나 수정안 등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해야 할 의안에 대하여는 어느 전문위원의 검토·보좌를 받아야 하는지(강정순 의원)

⇒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소관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검토·보좌를 받을수 있음.(답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대통령령」 제10조3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의회사무국의 조례나 규칙에도 관련규정 언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최선용의원)

⇒ 상위 규범인 「대통령령」에 전문위원의 업무와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자세히 명시된 내용을 별도로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답변)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